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2차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의 근거법 제정 〉

- 박홍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802호)
- 이용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830호)
- 박해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831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4
IV. 검토의견	9
1. 총괄 검토	9
가. 제정안의 제정 취지 및 제정 필요성	9
나. 제정안의 구성체계 및 주요내용	11
2. 주요 조문별 검토	13
가. 정의(박홍배·이용우·박해철의원안 제2조)	13
나. 기본원칙(박해철의원안 제3조)	17
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박홍배·이용우의원안 제3조, 박해철의원안 제4조)	20
라. 노동인권교육위원회·노동인권교육특별위원회 설치 등 (박홍배·이용우의원안 제5조, 박해철의원안 제6조)	22
마. 국가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 등(박홍배·이용우의원안 제6조, 박해철의원안 제7조)	29

바. 학교 노동인권교육(박홍배·이용우의원안 제10조, 박해철 의원안 제9조)	35
사. 사회 노동인권교육(박홍배·이용우의원안 제11조 및 박해철 의원안 제10조)	43
아. 사업장 등에서의 노동인권교육(이용우의원안 제12조 및 박해철의원안 제11조)	47
자. 노동인권교육전문기관의 지정 등(이용우의원안 제15조) ...	49

I. 제안경위

2025년 10월 29일 박홍배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2025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5년 12월 3일 이용우의원과 박해철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2025년 1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1. 박홍배의원안

모든 근로자는 헌법과 각종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노동기본권과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등을 보장받아야 함. 그러나 실제 노동현장에서는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사업주 등 우월적 지위에 의해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노동기본권 보호와 노동현장에서의 문제 예방을 위한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은 대두되고 있으나, 현재 노동인권교육은 관련 법률의 부재로 인해 특정 기관이나 단체의 자율적인 사업에 의존하고 있어, 그 실시가 지역별·계층별로 불균형하며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해 노동인권 침해 발생 시 근로자 스스로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가 명확히 드러남. 특히 청소년, 이주배경 근로자,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같은 노무제공

자와 프리랜서 등 노동인권약자의 경우 이러한 문제에 더욱 취약한 상황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와 사회에서의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또한 법률 제정을 통해 국민들로 하여금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게 하고, 노동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노동관 형성과 노동기본권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이용우의원안

모든 국민은 헌법과 국제노동규범에 따라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 노동기준에 관한 권리, 노동3권 등 기본적인 노동인권을 보장받아야 함. 그러나 현실의 노동현장에서는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 등 권리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노동자 스스로가 자신의 노동인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침해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그럼에도 현재 노동인권교육은 체계적인 법적 근거 없이 일부 기관이나 단체의 자발적 노력에 의존하고 있어, 지역별·계층별로 교육 기회가 불균등하고 체계적인 생애주기별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학교에서의 노동인권교육은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청소년(만 15~24세) 노동인권 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동 중 부당한 일을 경험했을 때 참고 일하거나 그만두는 등 소극적으로 반응한 청소년(만 15~24세)이 약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생애주기별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학교와 사회 전반에서 노동인권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노동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실현되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3. 박해철회원안

청소년, 이주 노동자,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 등 노동인권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임금체불, 산업재해, 부당대우 등 노동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으나, 현행 노동인권교육은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지역·기관별로 편차가 크고 체계적이지 못한 실정임.

또한 학교에서의 노동인권교육은 교육과정·교재·전문인력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이 노동기본권과 노동안전권을 충분히 이해할 기회를 갖기 어렵고, 사회·사업장에서도 교육 접근성이 낮아 노동인권 침해 예방 기능이 제한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교육의 기본체계를 확립하고, 학교·사회·사업장 전반에 걸친 종합적·체계적 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특히 취약계층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하여 노동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1. 박홍배의원안

-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 나.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사업추진 및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내 고용정책심의회 전문위원회로 노동인권교육위원회를 둠(안 제5조).
-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노동인권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년마다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6조).
- 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의 장은 국가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지역노동인권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7조).
- 마. 고용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노동인권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

가하여야 함(안 제9조).

바. 국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 및 시·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0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인권교육 관련 단체와 평생교육기관 등이 운영하는 노동인권교육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노동인권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1조).

아.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마다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안 제12조).

자. 국민의 노동관계 법령 이해력과 노동인권의식을 높이고, 노동인권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노동인권교육주간으로 함(안 제13조).

차.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 사업의 시행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15조).

2. 이용우의원안

-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애주기별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 나.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정책자문위원회에 노동인권교육 특별위원회를 둠(안 제5조).
-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국가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6조).
- 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국가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지역노동인권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7조).
- 마.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 및 시·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 및 시·도 교육감은 이를 반영하여야 함(안 제10조).
-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실시되는 사회 노동인권교육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1조).
- 사.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 등에서 사업주 또는 근로자·노무제공자·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직접 실시할 수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장 등에서 사업주 또는 근로자·노무제공자·프리랜서 등이 실시하는 노동인권교육을 지원할 수 있음

(안 제12조).

아.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에 따른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등의 기관을 노동인권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15조).

3. 박해철회원안

가. 국가는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나.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노동인권교육위원회를 둠(안 제6조).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포함한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의 장은 기본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3년마다 지역노동인권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7조).

라. 고용노동부장관은 3년마다 노동인권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함(안 제8조).

마. 국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

른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 및 시·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9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노동인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노동 인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등의 사업을 추진해야 함(안 제10조).

사. 사업주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1조).

아.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12조).

자.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동인권교육 사업의 시행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13조).

IV.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가. 제정안의 제정 취지 및 제정 필요성

헌법은 모든 국민이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짐을 명시하고, 국가로 하여금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또한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도록 법률로 정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음.¹⁾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은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가 노동기본권 형성을 위한 법률과 각종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사용자가 준수할 필요가 있으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와 책무 등에 관한 이해와 지식을 통해 개별 사업장에서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1)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에 3건의 제정안은 학생, 청소년, 근로자 등 국민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산업안전,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인권과 관련한 교육에 관하여 국가 차원의 시책을 수립하고, 학교와 사회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하고 올바른 노동관 함양을 유도하고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등을 제대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됨.

제정안과 같이 노동인권교육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경우 노동인권교육의 중요성이 널리 인식될 수 있으며, 「경제교육지원법」, 「통일교육지원법」, 「법교육지원법」,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분야에 대한 국가 차원의 교육의무를 규정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수 있겠음.²⁾

다만, 사회 각 분야의 전문분야별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를 모두 개별 입법을 통해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와 함께 현재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을 통해 정부 차원의 고용노동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³⁾

한편, 제정안과 유사하게 노동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

2) 개별 분야에 대한 교육의무 관련 입법례는 <참고 1> 국민 등 대상 의무교육 관련 법률 주요 내용을 참고

3)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을 설립하여 노사관계 당사자,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 국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폭넓게 하고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의 전문성 및 노동관계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제고하여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 있는 「노동교육의 실시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 2204289호)과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 2207865호)이 발의되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향후 심사 시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제정안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노동인권교육을 통해 국민들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한다는 법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교육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학교, 사회 등에서 전 국민에게 노동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나. 제정안의 구성체계 및 주요내용

3건 제정안 중 박홍배의원안은 15개 조문, 이용우의원안은 17개 조문, 박해철의원안은 13개 조문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음.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제4조),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노동인권교육위원회(박홍배·박해철의원안) 또는 노동인권교육특별위원회(이용우의원안)를 설치하며(박홍배·이용우의원안 제5조 및 박해철의원안 제6조),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박홍배·이용우의원안 제6조 및 박해철의원안 제7조), 학교 노동인권교육(박해철의원안 제9조 및 박홍배·이용우의원안

제10조)·사회 노동인권교육(박해철의원안 제10조 및 박홍배·이용우의원안 제11조)을 위한 국가·지자체와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과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제정안의 구성체계 >

박홍배의원안	이용우의원안	박해철의원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기본원칙)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의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
제5조(노동인권교육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노동인권교육정책의 심의·의결 등)	제6조(노동인권교육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국가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 등)	제6조(국가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 등)	제7조(노동인권교육 기본 계획 등)
제7조(지역노동인권교육 계획의 수립)	제7조(지역노동인권교육 계획의 수립)	
제8조(국가계획 및 지역 계획의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 등)	제8조(국가계획 및 지역 계획의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 등)	
제9조(노동인권교육의 추진성과 평가)	제9조(노동인권교육의 추진성과 평가)	제8조(노동인권교육의 추진성과 평가)
제10조(학교 노동인권교육)	제10조(학교 노동인권교육)	제9조(학교 노동인권교육)
제11조(사회 노동인권교육)	제11조(사회 노동인권교육)	제10조(사회 노동인권교육)
	제12조(사업장 등에서의 노동인권교육)	제11조(사업장에서의 노동인권교육 실시)
제12조(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	제13조(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	
제13조(노동인권교육주간)	제14조(노동인권교육주간)	
	제15조(노동인권교육전문 기관의 지정 등)	
제14조(업무의 위탁)	제17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5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16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13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2. 주요 조문별 검토

가. 정의(박홍배·이용우·박해철의원안 제2조)

1)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노동인권교육”, “학교 노동인권교육”, “사회 노동인권교육”을 각각 정의하고 있음.

“노동인권교육”에 대하여, 박홍배의원안은 ‘국민이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노동인권 보장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헌법 및 노동관계 규정과 노동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으로, 이용우의원안은 ‘노동조건에 관한 권리 등 국제노동기준과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인권에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감수성을 배양하며 노동인권에 관련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으로, 박해철의원안은 ‘근로조건 등 관련 노동관계 법령과 국제노동기준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노동인권 존중의 태도와 의사결정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으로 각각 정의함.

“학교 노동인권교육”에 대하여, 3건의 제정안은 모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노동인권교육으로 정의하고 있음. 다만 이용우의원안은 학교에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박해

철의원안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제외함을 명시하고 있음.

“사회 노동인권교육”에 대하여, 박홍배의원안은 노동인권교육 관련 단체와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행하는 노동인권교육으로, 이용우의원안은 국가, 지자체, 노동인권교육전문기관,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인권교육으로, 박해철의원안은 학교 노동인권교육 외 성인, 근로자, 사업주,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각각 정의함.

박홍배의원안	이용우의원안	박해철의원안
제2조(정의) 이 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인권교육”이란 국민이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노동인권 보장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헌법」 및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 규정과 노동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 노동인권교육”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동인권교육”이란 노동조건에 관한 권리, 안전하게 일할 권리, 노동3권 등 국제노동기준과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인권에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감수성을 배양하며 노동인권에 관련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 노동인권교육”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	제2조(정의) 이 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인권교육”이란 이란 근로조건, 산업안전,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차별금지 및 개인정보 보호 등 관련 노동관계 법령과 국제노동기준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노동인권 존중의 태도와 의사결정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 노동인권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

박홍배의원안	이용우의원안	박해철의원안
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인권교육을 말한다. 3. “사회 노동인권교육”이란 노동인권교육 관련 단체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이하 “평생교육기관”이라 한다) 등에서 하는 노동인권교육을 말한다.	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영재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노동인권교육을 말한다. 3. “사회 노동인권교육”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15조에 따른 노동인권교육전문기관, 노동인권교육 관련 단체,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노동인권교육을 말한다.	른 유치원을 제외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노동인권교육을 말한다. 3. “사회 노동인권교육”이란 학교 노동인권교육 외에 성인·근로자·사업주·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2) 검토의견

3건의 제정안은 “노동인권교육”에 대하여 헌법 및 노동관계법령, 국제노동기준 등에 관한 지식 등에 대한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헌법상 권리인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이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제정안의 취지를 감안할 때 동 정의조항은 타당하다고 보임.

다만 현재 노동문제에 관한 이념 대립과 이로 인한 갈등이 지속되

고 있으며, 노동인권교육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자의 입장차가 존재하는 상황임. 일례로, 2022년 개정 국가교육과정에 관한 논의 과정에서 노동교육 포함 여부와 관련한 사항으로 갈등이 발생한 사례도 있는바,⁴⁾ 노동과 관련한 각종 교육이 편향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한 일부의 우려도 제기된바 있음.⁵⁾

한편, “학교 노동인권교육”과 관련하여 이용우의원안은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영재학교⁶⁾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일부 영재학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가 아닌 것으로 해석⁷⁾될 여지가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향후 제정안의 심사 과정에서 이를 고려하여 영재학교의 명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고,

박해철의원안은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범위에서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 제외됨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는 국가교육과정을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4) 한국일보, ““교육과정에 노동 교육 넣어야” 주장에 난입한 보수단체 회원...공청회 파행”, 2022.10.9.

5) 조선에듀, “학교 노동교육 의무화?... ‘편향성 우려’ 팽배”, 2021.4.13.

6)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영재학교”란 영재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지정되거나 설립되는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를 말한다.

7)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3(과학영재학교의 설치·운영) ① 과학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원에 두는 과학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본다.

③ 과학영재학교의 학사·교원 및 운영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재교육진흥법」을 따르고 「초·중등교육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총장은 과학영재학교를 지휘·감독한다.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 명시⁸⁾하고 있어 향후 법 적용 과정에서 유치원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상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참고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겠음.

또한 “사회 노동인권교육”에 대하여 박홍배의원안과 이용우의원안은 노동인권교육 관련 단체, 노동인권교육전문기관, 평생교육기관 등 교육의 주체를 열거하여 정의하고 있는 반면 박해철의원안은 교육의 대상을 중심으로 성인·근로자·사업주·취약계층 등에게 이루어지는 노동인권교육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음.

사회 노동인권교육의 정의를 교육 주체를 명시하는 경우 지원 근거의 명확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며, 교육 대상 중심으로 규정할 경우 정책의 포괄성과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보이는바 향후 제정안 심사 과정에서 입법 취지와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나. 기본원칙(박해철의원안 제3조)

1) 제정안의 주요내용

-
- 8)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국가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의 고시 등) ① 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시한 국가교육과정에 대하여 조사·분석 및 점검을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국가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박해철의원안은 노동인권교육은 정치적 편향 없이 「교육기본법」 제6조의 중립성 원칙을 준수하고, 교육대상자의 발달단계·특성에 맞춰 노동인권 관련 실천적 역량 함양에 중점을 두며, 노동자·사용자·노동전문가 등 다양한 입장을 균형있게 다루어야 함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내용임.

박해철의원안
제3조(기본원칙) ① 노동인권교육은 정치적 편향 없이 「교육기본법」 제6조의 중립성 원칙을 준수한다. ② 노동인권교육은 교육대상자의 발달단계·특성에 맞춰 노동인권 관련 실천적 역량 함양에 중점을 둔다. ③ 노동인권교육은 노동자·사용자·노동전문가 등 다양한 입장을 균형 있게 다루어야 한다.

2) 검토의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차가 존재하는 상황으로, 제정안은 이를 고려하여 노동인권교육이 정치적 편향 없이 다양한 입장을 반영하여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함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음.

현행 「교육기본법」은 “교육이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⁹⁾고 하여 교육의 중

9)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립성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특정 분야에 대한 국가의 교육사업 등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제정안과 같이 노동인권교육이 중립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명시할 필요성이 인정됨.

이와 관련하여, 「경제교육지원법」 및 「통일교육 지원법」은 경제교육과 통일교육이 특정의 이익이나 이념에 편향되지 않도록 함을 교육의 기본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입법례를 참고할 필요도 있겠음.

교육의 기본원칙 관련 참고 입법례

「경제교육지원법」 제3조(경제교육의 기본원칙) ① 경제교육은 국민의 경제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용적인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 경제교육은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경제교육은 국내와 국외, 학교와 학교 밖에서 모두 장려되어야 한다.

「통일교육 지원법」 제3조(통일교육의 기본원칙) ①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여야 한다.

② 통일교육은 개인적·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박홍배·이용우의원안 제3조, 박해철의원안 제4조)

1) 제정안의 주요내용

박홍배의원안과 박해철의원안은 노동인권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용우의원안은 노동인권교육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함.

박홍배의원안	이용우의원안	박해철의원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동인권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동인권교육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동인권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검토의견

제정안 중 박홍배의원안과 박해철의원안은 노동인권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한 반면, 이용우의원안은 제정안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노동인권교육은 국민에 대한 여러 방면의 교육 중 특정 분야에 대한 교육으로, 제정안은 노동인권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바 이용우의원안은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반면 박홍배의원안과 박해철의원안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제정안의 보충적 적용을 전제로 한 것으로 판단됨.

한편, 「법교육지원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식생활 교육 지원법」 등 다른 입법례에서도 대부분 해당 법률의 보충적 적용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다른 법률과의 관계 관련 참고 입법례

「법교육지원법」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환경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식생활 교육 지원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식생활 교육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라. 노동인권교육위원회·노동인권교육특별위원회 설치 등
(박홍배·이용우의원안 제5조, 박해철의원안 제6조)

1)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노동인권교육위원회(박홍배·박해철의원안) 또는 노동인권교육특별위원회(이용우의원안)을 설치하는 내용임.

노동인권교육(특별)위원회는 ①노동인권교육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②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③노동인권교육 현황 및 추진성과, ④노동인권교육 내용·방법의 적정성 및 중립성, ⑤노동인권교육과 관련한 연구·개발 및 보급, ⑥각 부처 및 기관의 협력·조정, ⑦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지원, ⑧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함.

위원회의 인원은 박홍배의원안 20명, 이용우·박해철의원안 15명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박홍배·박해철의원안은 그 밖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이용우의원안은 기본적인 구성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음.

이용우의원안은 고용노동부·교육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노동계·경영계 중 노동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학계·노동전문가 중에서 노동인권에 관한 학식이

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도록 함.

박홍배의원안	이용우의원안	박해철의원안
제5조(노동인권교육위원회 설치 등) ①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사업추진 및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와 전문위원회로 노동인권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노동인권교육정책의 심의·의결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소관 정책자문위원회에 노동인권교육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노동인권교육위원회 설치 등) ①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노동인권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노동인권교육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1. 노동인권교육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1. 노동인권교육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노동인권교육 현황 및 추진성과에 관한 사항	3. 노동인권교육 현황 및 추진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노동인권교육 현황 및 추진성과에 관한 사항
4. 노동인권교육 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및 중립성에 관한 사항	4. 노동인권교육 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및 중립성에 관한 사항	4. 노동인권교육 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및 중립성에 관한 사항

박홍배의원안	이용우의원안	박해철의원안
5. 노동인권교육과 관련하여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노동인권교육과 관련하여 각 부처 및 기관의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 7.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노동인권교육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노동인권교육과 관련하여 각 부처 및 기관의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 7.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한다. 1. 고용노동부·교육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노동계, 경영계 중에서 노동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학계, 노동전문가 중에서 노동인권에 관한	5. 노동인권교육과 관련하여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노동인권교육과 관련하여 각 부처 및 기관의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 7.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박홍배의원안	이용우의원안	박해철의원안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검토의견

3건의 제정안은 노동인권교육의 정책 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노동인권교육(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임.

제정안에 따라 국가가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와 관련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서는 노동인권교육과 관련한 관계 부처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바, 위원회 설치를 통해 이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음.

다만, 3건의 제정안은 위원회의 설치 방식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바, 박홍배의원안은 「고용정책 기본법」 상 고용정책심의회에 전문위원회로,¹⁰⁾ 이용우의원안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

한 법률」 상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회로,¹¹⁾ 박해철의원안은 고용노동부에 독립된 위원회로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의 설치 방식에 관하여는 노동인권교육의 정책적 성격, 현재 고용정책심의회에 설치되어 있는 전문위원회¹²⁾ 또는 정책자문위원회의 분과위원회·특별위원회¹³⁾와의 유사성,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이 가지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보임.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경제교육지원법」, 「법교육지원법」 등 다른 교육 지원 분야 법률에서는 해당 소관 부처에 별도의 위원회를 두는 입법례가 대부분이며, 기존 위원회를 활용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10)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①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역고용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고용심의회로 볼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정책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책심의회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심의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전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심의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는 정책심의회 심의로 본다.

⑥ (생략)

1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2) 현재 고용정책심의회 전문위원회는 ①지역고용전문위원회, ②고용서비스전문위원회, ③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④적극고용개선전문위원회, ⑤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 ⑥가사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⑦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⑧직업능력개발전문위원회 ⑨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 등 9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음.

13) 현재 고용노동부 정책자문위원회에는 산재예방보상, 노사, 근로기준, 고용 등 4개 분과위원회와 조직·문화 등 1개 특별위원회가 구성·운영 중임.

위원회 설치 관련 참고 입법례

「경제교육지원법」 제8조의2(경제교육관리위원회)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교육에 대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경제교육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법교육지원법」 제4조(법교육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교육위원회를 둔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식생활 교육 지원법」 제18조(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 ① 식생활 교육에 관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산림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한편,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이용우의원안은 위원의 구성 기준을 법률에 정하고 있는 반면 박홍배의원안과 박해철의원안은 이를 포괄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박홍배의원안의 경우 위원회를 고용정책심의회의의 전문위원회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바,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이 전문위원회의 위원 기준을 정하고 있다는 점¹⁴⁾을 고려하여 기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고 보이나, 박해철의원안의 경우 별

14)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전문위원회)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1. 전문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있는 근로자 대표 및 사업주 대표
2. 전문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도의 독립된 위원회로서 노동인권교육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원회 구성 기준과 관련한 대략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¹⁵⁾이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는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미 설치된 정책자문위원회 등을 활용하거나 분과위원회 형태로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1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마. 국가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 등(박홍배·이용우의원안 제6조,
박해철의원안 제7조)

1)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교육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노동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및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으로 하여금 지역노동인권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임.

계획의 수립 주기는 박홍배의원안과 이용우의원안은 5년으로, 박해철의원안은 3년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박홍배의원안과 이용우의원안은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이의 추진 실적을 제출하도록 함.

박홍배의원안	이용우의원안	박해철의원안
제6조(국가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	제6조(국가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	제7조(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포함한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박홍배의원안	이용우의원안	박해철의원안
다.	다.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국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동인권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1. 노동인권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1. 노동인권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노동인권교육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	2. 노동인권교육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	2. 노동인권교육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
3. 노동인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3. 노동인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3. 노동인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4.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5. 노동인권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노동인권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노동인권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노동인권교육 관련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노동인권교육 관련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노동인권교육 관련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국가계획의 이행 점검 및 평가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7. 국가계획의 이행 점검 및 평가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7. 기본계획의 이행 점검 및 평가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노동인권교	8. 그 밖에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8. 그 밖에 노동인권교

박홍배의원안	이용우의원안	박해철의원안
육의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계획의 수립 절차를 준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지역노동인권교육 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은 국가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계획의 수립 절차를 준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지역노동인권교육 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국가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지역노동인권교육 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	육의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은 기본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대도시의 지역노

박홍배의원안	이용우의원안	박해철의원안
“시·도”라 한다)와 대도시의 지역노동인권 교육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와 대도시의 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소관 업무에 반영한 추진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경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소관 업무에 반영한 추진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동인권 교육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와 대도시의 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박홍배의원안	이용우의원안	박해철의원안
국가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검토의견

제정안은 노동인권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국가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으로 수립하고, 시·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국가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 노동인권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노동인권교육을 국가의 주요한 정책 과제로 체계화하고, 중앙-지방 간 역할 분담과 정책 이행 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입법적 의의가 있음.

다만, 박홍배의원안과 이용우의원안은 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박해철의원안은 3년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5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중장기적으로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은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 있고, 3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책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반면 잦은 계획 수립으로 행정 부담이 증가하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겠음.

한편, 박홍배의원안과 박해철의원안은 지역노동인권교육계획의 수립 주체로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¹⁶⁾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을 포함하고 있음.

이는 현장 중심의 정책결정을 위해 발의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 최근 의결됨에 따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에게도 지역환경교육계획을 수립¹⁷⁾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인구 50만 이상의 대都市는 인구 규모 및 교육 수요가 크므로, 교육 수요 대응성을 제고하고 지역 특화 노동인권교육을 위하여 시·도의 계획과 별도의 독자적인 노동인권교육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나, 광역자치단체의 계획과 유사한 계획이 수립되고 사업의 유사 중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¹⁸⁾도 제시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

16) 「지방자치법」 제198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①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17)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지역환경교육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은 국가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대도시의 지역환경교육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와 대도시의 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 2018년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016093호, 정부 제출) 제정 논의 시 경상남도가 이와 같은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바. 학교 노동인권교육(박홍배·이용우의원안 제10조, 박해철 의원안 제9조)

1)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국가로 하여금 학교 노동인권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 및 시·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 및 시·도 교육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육감은 이를 반영하도록 하되, 박홍배의원안과 이용우의원안은 반영을 의무화하는 반면 박해철의원안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박홍배의원안	이용우의원안	박해철의원안
제10조(학교 노동인권교육) ① 국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	제10조(학교 노동인권교육) ① 국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	제9조(학교 노동인권교육) ① 국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

박홍배의원안	이용우의원안	박해철의원안
2조에 따른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이 제1항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 및 시·도 교육감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 교육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이 제1항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 및 시·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 교육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2조에 따른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이 제1항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 및 시·도 교육감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 교육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2) 검토의견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3조¹⁹⁾는 학교가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19)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18년부터 실시중인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는 중학교 사회 및 고등학교 통합사회 과목에 ‘근로자의 의미와 보호의 필요성’, 근로자 권리’, ‘노동권 침해구제’, ‘청소년 노동인권’ 등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고,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도 이를 범교과 학습주제 내용으로 설정하여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생이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체계적으로 학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노동인권교육’이 배제되어 학교에서의 노동인권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는 바,²⁰⁾²¹⁾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것을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 교육감에게 요청하고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취지임.

청소년 또는 학교를 갓 졸업한 청년들이 노동인권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근로현장에 투입되는 경우 노동기본권이 침해당했음에도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속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④ 학교의 교과(敎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 매일노동뉴스, “‘노동’ 빠진 2022 개정 교육과정, 표류하는 ‘노동인권교육’”, 2022.9.1.

21) 다만,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는 노동(인권) 관련 내용이 범교과 학습주제로 반영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실과(일과 노동의 가치), 경영·금융(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 일반사회(노동문제 등 사회문제 탐색), 현대사회와 윤리(노동 가치 존중), 인간과 경제활동(노동인권, 기업가 정신 등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

불구하고 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해결 방법 등을 알지 못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정안과 같이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을 포함함으로써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기본권이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제정안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 및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²²⁾는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권한을 국가교육위원회에 부여하고 있으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²³⁾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정책 수립과 국가교육위원회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명시하고 있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²⁴⁾은 국가교육과정 개정 여부의 심의 요건으로 ①교육부장관의 요

22)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1조에 따른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고시 등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립·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정한 사항

23)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립·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24)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국가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의 고시 등) ① 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시한 국가교육과정에 대하여 조사·분석 및 점검을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국가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청, ②시·도 교육감 협의체의 요청, ③20만명 이상이 동의한 국민요청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이와 관련하여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통일교육 지원법」의 경우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통일교육이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학교 등의 ‘교육과정’이 아닌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교육지원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질 높은 학교

③ 그 밖에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변경 등)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 교육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수립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해야 한다.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립 또는 변경의 진행 여부를 심의·의결해야 한다.

1. 교육부장관이 새로운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새로 수립하거나 종전의 기준과 내용을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가 시·도 교육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새로 수립하거나 종전의 기준과 내용을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3.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국민의견에 대해 게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의하는 사람의 수가 20만명 이상인 경우

법교육을 위하여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법교육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을 대상으로 법교육 연수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 교육을 위한 지원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음.

즉, 이를 종합할 때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을 반영할 것을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에게 요청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반영하거나 반영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는 제정안에 대해서는 국가 교육과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정책 수립과 국가교육위원회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와 함께 각 분야별 학교 교육에 대해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 관련 입법례를 참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겠음.

학교교육 관련 참고 입법례

「통일교육 지원법」 제8조(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①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의 통일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이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에게 통일문제와 관련된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연구소의 설치·운영 등을 권장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에 관한 체험교육 및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초·중등학교의 통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중등학교의 통일에 관한 체험교육 및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학교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유치원의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 1의2. 어린이집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학교의 환경 관련 교과 또는 범교과 교육을 통한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학교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환경체험·보전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제1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에 따른 학교 및 어린이집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학교 및 법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학교환경교육 관련 정책 및 교재개발 등을 위한 연구
2.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와 그 결과의 보급
3.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하는 해양환경교육의 실시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0조의2(학교환경교육의 실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법교육지원법」 제7조 (학교 법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 법교육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운영하는 법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법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학교 법교육 활동 및 자치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을 대상으로 전문성 함양을 위한 법교육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민간 교육기관의 법교육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 및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제정안은 노동인권교육의 교육과정 반영 대상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외에도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까지 포함하고 있으나, 헌법 제31조제4항²⁵⁾은 대학의 자율성을 법률에 따라 보장

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고등교육법」은 학교의 교육과정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²⁵⁾,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가교육과정으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제정안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①대학 교육과정의 자율성 등을 고려하여 대학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교육부의 의견을 감안하여 대상 학교에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②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하는 노동인권교육을 학교 교과과정에 반영토록 하는 것은 국가교육위원회의 법률적 권한과 교과과정 개정 절차 등과 상충되는 면이 있으므로 학교 교육 관련 유사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한편, 유관 기관 의견으로, 교육부는 ①「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헌법 등에 의해 고도의 자율성을 가지며, 교육과정 운영 등과 관련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지도·감독체계, 자율성 등이 상이하므로 이를 제외할 필요가 있고, ②교육과정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사항이므로 제정안의 ‘교육부장관’은 ‘국가교육위원회’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25)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26) 「고등교육법」 제21조(교육과정의 운영) ①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고,

국가교육위원회는 노동인권 관련 내용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것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사무이므로,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기보다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사. 사회 노동인권교육(박홍배·이용우의원안 제11조 및 박해철의원안 제10조)

1) 제정안의 주요내용

3건의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강좌에 노동인권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박홍배의원안과 이용우의원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노동인권교육 단체와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노동인권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①사회 노동인권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②사회 노동인권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③그 밖에 사회 노동인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반면 박홍배의원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①노동인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②사회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 ③그 밖에 사회 노동인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함.

박홍배의원안	이용우의원안	박해철의원안
제11조(사회 노동인권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노동인권의식 함양 및 노동관계법 이해를 위하여 노동인권교육 단체와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노동인권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등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노동인권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 노동인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사회 노동인권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노동인권의식 함양 및 노동관계법 이해를 위하여 노동인권교육 단체와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노동인권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등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노동인권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 노동인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사회 노동인권교육)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등에서 운영하는 각종 강좌 등에 노동인권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노동인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박홍배의원안	이용우의원안	박해철의원안
1. 사회 노동인권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1. 사회 노동인권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1. 노동인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2. 사회 노동인권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2. 사회 노동인권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2. 사회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
3. 그 밖에 사회 노동인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 노동인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 노동인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검토의견

헌법상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지니므로,²⁷⁾ 국민 모두는 노동기본권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노동기본권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이에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에 따라 고용노동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동법에 근거하여 ‘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 ‘청소년, 청년 등 국민에 대한 노동인권 및 노동자 권리보호 관련 교육’ 등 사회 노동인권교육을 수행하고 있음.²⁸⁾

27)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28)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6조(사업) ①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

제정안은 이에 더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사회 노동인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각종 교육과정 개선을 지원하고, 노동인권교육과 관련한 각종 사업 등을 추진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교육을 확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박홍배의원안과 이용우의원안은 노동인권교육 단체와 평생교육기관 등을 명시하여 이들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활동 및 시설·장비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박해철의원안은 ‘사회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에 관한 사업을 국가 및 지자체로 하여금 추진하도록 하여 지원 대상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음.

이는 “사회 노동인권교육”을 정의함에 있어 박홍배의원안과 이용우의원안은 교육의 주체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박해철의원안은 교육의 대상을 중심으로 규정한 데 따른 차이로 보이는바, 사회 노동인권교육을 민간 교육주체에 대한 지원 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설계할 것인지 또는 국가 및 지자체의 포괄적인 진흥 정책으로 설계할 것인지

-
2. 고용노동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3. 청소년, 청년 등 국민에 대한 노동인권 및 노동자 권리보호 관련 교육
 4. 교육원 외의 자가 수행하는 고용노동교육 사업에 대한 지원
 5. 고용노동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보급 및 관리
 6.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의 양성 및 관리
 7. 고용노동교육 관련 홍보 및 상담
 8. 국내외 고용노동교육 관련 자료수집, 통계작성 및 간행물 발간
 9. 고용노동교육 관련 국제협력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관련 부대사업
 11. 고용노동부장관,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
- ② 교육원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혜자에게 그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지에 대한 입법정책적 고려를 통해 정의 규정 심사와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아. 사업장 등에서의 노동인권교육(이용우의원안 제12조 및 박해철의원안 제11조)

1) 제정안의 주요내용

이용우의원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사업장 등에서 사업주 또는 근로자·노무제공자·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인권교육을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자체로 하여금 사업주 및 근로자 등이 사업장 등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한편, 박해철의원안은 사업주에게 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동인권을 실시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사업주 또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이용우의원안	박해철의원안
제12조(사업장 등에서의 노동인권교육)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 또는 사업장 밖에 설치된 교육장(이하 이	제11조(사업장에서의 노동인권교육 실시)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동인권

이용우의원안	박해철의원안
조에서 “사업장등”이라 한다)에서 사업주 또는 근로자·노무제공자·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인권교육을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노무제공자·프리랜서 등이 사업장등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노동인권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또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검토의견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궁극적인 목적 중 하나는 국민이 사업장 등에서 근로하면서 자신의 노동 관련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인식함으로써 노동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인바, 제정안과 같이 사업장 등에서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이용우의원안은 교육의 대상을 사업주 및 근로자 뿐만 아니라 노무제공자·프리랜서 등으로 폭넓게 설정하고 있고, 예산 지원의 대상도 사업 규모 등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는 반면, 박해철의원안은 교육의 대상을 사업주 및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고, 예산 지원 대상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제한

하고 있는바, 행정·재정적 부담,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에 대한 교육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겠음.

제정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교육 대상은 근로자 외 다양한 고용 형태를 포괄적으로 하되, 지원 대상은 재정 부담과 우선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규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자. 노동인권교육전문기관의 지정 등(이용우의원안 제15조)

1)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노동인권교육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등의 전문기관을 노동인권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노동인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교육과정, 교육내용의 체계성 및 교육기능 수행 역량, 교육 관련 인력의 전문성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노동인권교육전문기관이 수행하는 각종 노동인권교육 관련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이용우의원안

제15조(노동인권교육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등의 법인·기관·단체를 노동인권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노동인권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교육과정, 교육내용의 체계성 및 교육기능 수행 역량, 교육 관련 인력의 전문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노동인권교육전문기관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동인권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원
2. 노동인권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3. 교육 시설·장비의 설치 및 활용
4. 노동인권교육 관련 법인·기관·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5. 그 밖에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노동인권교육전문기관의 구체적인 지정요건, 지정절차와 그 밖의 구체적인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검토의견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노동인권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노동인권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업을 추진할 조직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이에 이용우안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 중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등의 전문기관을 노동인권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면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업무 추진의 효율

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35

참고 1

국민 등 대상 의무교육 관련 법률 주요 내용

□ 경제교육지원법(소관: 기재부)

주요내용
□ 제3조(경제교육의 기본원칙) 국민 경제생활에 도움줄 수 있는 실용적인 방향으로 실시하고,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여서는 아니되며, 국내외, 학교와 학교 밖에서 모두 장려되어야 함 □ 제4조(국가의 임무) 학교 안팎에서 경제교육 기회 제공, 국민 경제에 적합한 경제 교육 내용 마련, 경제교육인력의 체계적 양성 노력 □ 제8조(경제교육의 추진) 장관은 국가 경제교육 전반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조정, 교육교재 개발 및 보급, 인력 양성 및 활용 등 경제교육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를 중립적·효율적으로 추진 □ 제8조의2(경제교육관리위원회) 경제교육정책 수립·조정, 경제교육사업 적정성·중립성, 경제교육 관련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 심의·평가 □ 제9조(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운영) 지역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경제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실시할 능력이 있는 기관(단체) 지정 - 경제교육인력 연수·활용, 지역실정에 맞는 경제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소외계층 등 지역주민 경제교육 등의 사업 수행

□ 통일교육지원법(소관: 통일부)

주요내용
□ 제3조(통일교육의 기본원칙)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여야 함, 개인적·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됨 □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는 통일교육 실시, 전문인력 양성·지원, 교재의 개발·보급 등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시행 □ 제6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장관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통일교육기본계획을 수립 -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추진목표와 방향, 각 부처 및 기관·단체 협조에 관한 사항, 국민의식 제고, 전문인력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 등 포함 □ 제6조의3(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운영) 통일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실시할 능력이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교육센터로 지정 가능 □ 제8조(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장관은 통일교육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특별·광역시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교육과정에 반영 - 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매년 초·중등학교의 통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법교육지원법(소관: 법무부)

주요내용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는 법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 - 법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국민의 인식 제고, 전문인력의 양성·배치·처우 및 연수, 관련 프로그램 등의 연구·개발 및 지원 등 포함 □ 제4조(법교육위원회의 설치 등) 법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심의 □ 제5조(법문화진흥센터의 지정 등) 법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실시할 능력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법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 제7조(학교 법교육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초·중등·고등교육법 제2조)가 운영하는 법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법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 □ 제9조(사회 법교육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교육 관련 단체와 평생교육기관 등이 운영하는 법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법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관: 환경부)

주요내용
□ 제4조(책무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짐 - 초·중등학교장은 학교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환경교육 교과과정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 -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 □ 제5조(국가환경교육계획의 수립) 장관은 환경교육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환경교육계획을 수립 -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환경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 제6조(시·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시·도지사는 국가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을 수립 □ 제8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운영)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관 소속으로 환경교육위원회를 둠 - 국가계획 수립·평가,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등 심의 □ 제10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초·중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을 지원 - 장관은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학교 및 어린이집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교육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

주요내용
□ 제10조의2(학교환경교육의 실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 □ 제13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 -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국가기관, 군부대, 기업 및 사회·종교단체 등에 서의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등 포함 □ 제24조(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장관은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 하기 위하여 국가환경교육센터를 지정 - 환경교육교재 및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국가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조사,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등 포함 □ 제25조(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시·도지사는 지역 내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을 수행하기 위하여 광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소관: 산림청)

주요내용
□ 제3조(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하며,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 □ 제4조(산림교육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청장은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 립교육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 산림교육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산림교육전문가 육성·지원방안,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방안, 산림교육자료 개발·보급 등 포함 □ 제6조(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산림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 장 소속으로 산림교육심의위원회를 둔 - 종합계획 수립, 산림교육 활성화 및 지원,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산림교육프 로그램 인증, 산림교육센터 설치 및 지정에 관한 사항 등 □ 제8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등) 청장 또는 자치단체장은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 -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보급하려는 자는 청장에게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음 □ 제13조(산림교육센터의 지정 등) 청장은 필요한 경우 산림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국가·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을 산림교육센터로 지정 - 청소년, 소외계층 등 일반인 산림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참고 2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관련 조례 현황

시도	조례명	제정일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2018.01.04.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8.11.14.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2020.07.13.
광주	광주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2019.06.01.
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	2015.08.14.
울산	울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2020.12.17.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2019.09.30.
경기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2016.01.04.
강원	강원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2019.07.05.
충북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2019.07.12.
충남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등에 관한 조례	2015.12.30.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	2016.10.27.
경남	경상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2021.05.06.
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노동인권교육 조례	2019.11.20.

* 14개 시·도교육청 포함하여 전국 117개 자치단체에서 노동인권 보호(교육) 관련 조례 제정·시행 중(서울시 동대문구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부산 영도구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등)